

(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-참조4)

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

(이덕수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678
----------	------

발의년월일 : 2012. 11.

발 의 자 : 이덕수·이윤우·김순례
김유석·마선식·최만식
김 용·김재노·김선임
유근주(10명)

1. 제안이유

- 「성남시 행정기구 설치조례」의 개정에 따른 위원회 소관부서 명칭을 집행부 직제에 부합하도록 조정하고
- 의회 각 위원회에 실무 중심의 간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위원장 사고 시 그 직무를 대행 하도록 규정 되어 있는 간사의 위상을 제고하여 위원회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간사 명칭을 그 직무에 맞게 부위원장으로 개정 하려는 것임

2. 주요골자

- 경제환경위원회 소관부서 중 “복지보건국”을 “교육문화환경국”으로 개정 (안 제3조제2항제3호 나목)
- 제11조 조제목“(간사)”를 “(부위원장)”으로 각항 중의 “간사”를 “부위원장”으로 개정

※ 타시도 개정사례 : 안양, 고양, 서울, 대구, 대전, 울산, 전주, 청주, 포항

3. 개정조례안 : 별 첨

4. 신·구조문 대비표 : 별 첨

5. 관계법령 발채 : 별 첨

성남시 조례 제 호

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

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

제3조제2항제3호 나목 중 “복지보건국”을 “교육문화환경국”으로 한다.

제11조 조제목 “(간사)”를 “(부위원장)”으로, 제1항 중 “간사”를 “부위원장”으로, 제2항 중 “간사는”를 “부위원장은”으로, 제3항 중 “간사가”를 “부위원장이”로 한다.

부 칙

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②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된 간사는 이 조례에 의하여 부위원장으로 호선된 것으로 한다.

신 · 구 조 문 대 비 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 (상임위원회 직무와 그 소관) ① (생략) ② (생략) 1. 가. ~ 다. (생략) 2. 가. ~ 마. (생략) 3. 경제환경위원회 가. (생략) 나. <u>복지복건국</u> 속하는 사항 중 환경정책과, 녹색성장과에 속하는 사항 제11조 (간사) ① 위원회에는 <u>간사</u> 1인을 둔다. ② <u>간사</u>는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. 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<u>간사가</u>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.	제3조 (상임위원회 직무와 그 소관) ① (현행과 같음) ② (현행과 같음) 1. 가. ~ 다. (현행과 같음) 2. 가. ~ 마. (현행과 같음) 3. 경제환경위원회 가. (현행과 같음) 나. <u>교육문화환경국</u> ----- ----- 제11조(부위원장) ① -----<u>부위원장</u>----- ② <u>부위원장은</u> ----- ----- ③ ----- <u>부위원장이</u> -----

【 관계법령 발취 】

☐ 지방자치법

제62조(위원회에 관한 조례) 위원회에 관하여 이 법령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
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

